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allianzgi.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5년 11월 24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11월 26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 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2015.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allianzgi.com) 및 각 판매회사 본·지점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4
3. 모집예정금액	-----	4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5
5. 인수에 관한 사항	-----	5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5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6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7
4. 집합투자업자	-----	7
5. 투자운용인력	-----	7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9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11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12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16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19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25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29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31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33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3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39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4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4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46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	46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47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47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47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49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52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53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57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57

[참고] 펀드 용어의 정리	-----	58
----------------	-------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코드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52783
C1	53964
C2	94290
C3	94352
C4	94490
C5	94505
A2	14209
B	32034
E	14210
C(W)	53965
C(P)	AE177
S	AQ29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 펀드 용어의 정리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 좌

이 투자신탁은 10 조 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 또는 예정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운용사(www.allianzgi.co.kr) 홈페이지 참고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코드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52783
C1	53964
C2	94290
C3	94352
C4	94490
C5	94505
A2	14209
B	32034
E	14210
C(W)	53965
C(P)	AE177
S	AQ29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주요 내용
2001.05.02	최초설정
2005.08.19	회사명 명칭변경에 따른 펀드명 변경
2005.11.09	간접자산운용업법 적용으로의 변경
2005.11.30	투자신탁명 및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008.05	갱신
2008.10	투자신탁 약관 변경: 장기 적립식 가입고객 세제혜택
2009.05	- 집합투자계약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변경) - 투자신탁명 변경 AllianzGI Best 중소형 주식투자신탁 A-1호 →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 투자신탁[주식]
2009.05	- 클래스 추가(Class A2: 선취클래스, Class E: 인터넷클래스)
2009.06	환매수수료 변경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2009.09	- 이익 분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른 최근 재무제표 반영 등 기재사항 업데이트 - 집합투자업자 결산에 따른 최근 요약 재무 정보 반영
2010.5.	-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등 반영 - 투자대상자산 추가(공모주, 증권예탁증권 투자 가능) - Class A 판매보수 인하(1.54%→1.50%)

2010.8	- 책임운용인력변경(김정우 →정영훈)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제93조 및 제223조) - 최근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확정 반영 및 기재사항 갱신
2010.10	- Class A 명칭 변경(Class A → Class C1) - CDSC 적용으로 인해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5 추가 - Class E 판매보수 인하(1.080%→1.030%→0.980%)
2010.11	- 모집예정금액 변경(5,000억 좌 → 10조 좌)
2011.07	- 책임운용인력변경(정영훈→김 한)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및 이로 인한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알리안츠 Best 중소형증권투자신탁[주식]→알리안츠 Best 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 [주식])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012.11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자본시장법 (2012.06.29), 자본시장법시행령(2011.11.05)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기준”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부책임운용 추가) 퇴직연금 클래스인 C(P) 클래스 추가
2013.07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부책임운용인력변경(박찬우→하중혁)
2014.03	비교지수 변경(KOSPI 100% → KOSPI 대형주 25%+ KOSPI 중형주 40%+ KOSPI 소형주 5%+ KOSDAQ 30%) 수익증권 신설 (Class S 수익증권)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2013.08.29)개정 사항 반영
2014.07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014.09	- Class B 판매보수 인하(0.07%→0.05%) - Class I 명칭 변경(Class I → Class C(W)) 및 가입자격 변경
2014.10	-책임운용인력의 변경 (김한→하중혁) -부책임운용인력의 변경 (하중혁→김한)
2015.08	-부책임운용인력 변경 (김한 → 차소윤) -투자대상 자산 추가(양도성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매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015.11	-환매수수료 폐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 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알리안츠타워 ☎ 02-2071-9900

주1)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15.07.31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책임운 용전문 인력	하종혁	74년생	이사	8개 ^{주2)}	3,266억 ^{주2)}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 고려대학교 국제통상 석사 2011.03~현재 당사 주식운용팀 운용역 2009.06~2011.02 KTB투자증권 조사역 2007.07~2009.05 유진투자증권 조사역 2004.09~2007.06 한누리투자증권 조사역
부책임 운용전 문인력	차소윤	87년생	대리	2개	74억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 재무경제학 2012.08~현재 당사 주식리서치팀 2010.10~2012.08 KB투자증권 리서치연구원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인력”이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 보수가 약정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117억(7개)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운 용 기 간
책임운용전문인력	김정우	2005.11.30 ~ 2010.08.16
책임운용전문인력	정영훈	2010.08.16 ~ 2011.07.04
책임운용전문인력	김한	2011.07.04 ~ 2014.10.21
책임운용전문인력	하종혁	2014.10.21~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박찬우	2011.11.23 ~ 2013.07.1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하종혁	2013.07.10 ~ 2014.10.2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한	2014.10.21~2015.08.2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차소윤	2015.08.21~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15.07.31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책임운 용전문 인력	하종혁	74년생	이사	8개 ^{주2)}	3,266억 ^{주2)}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 고려대학교 국제통상 석사 2011.03~현재 당사 주식운용팀 운용역 2009.06~2011.02 KTB투자증권 조사역 2007.07~2009.05 유진투자증권 조사역 2004.09~2007.06 한누리투자증권 조사역
부책임 운용전 문인력	차소윤	87년생	대리	2개	74억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 재무경제학 2012.08~현재 당사 주식리서치팀 2010.10~2012.08 KB투자증권 리서치연구원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인력”이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 보수가 약정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117억(7개)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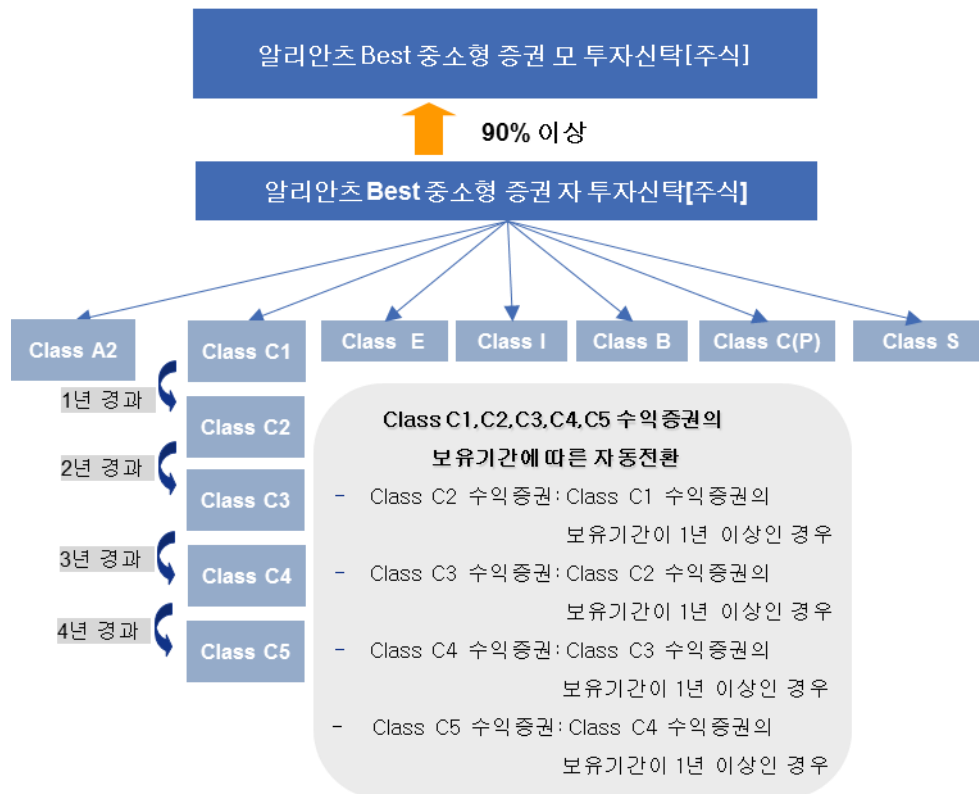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운 용 기 간
책임운용전문인력	김한	2011.07.04 ~ 2014.10.21
책임운용전문인력	하종혁	2014.10.21~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박찬우	2011.11.23~2013.07.1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하종혁	2013.07.10 ~ 2014.10.2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한	2014.10.21~2015.08.2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차소윤	2015.08.21~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모자형,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 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행위는 종류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Class)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			보수(%)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집합투자 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 관리
C1	2006.01.13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0.650	1.500	0.030	0.015
C2	2010.10.18	Class C1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0.650	1.375	0.030	0.015
C3	2010.10.18	Class C2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0.650	1.250	0.030	0.015
C4	2010.10.18	Class C3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0.650	1.125	0.030	0.015
C5	2010.10.18	Class C4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0.650	1.000	0.030	0.015
A2	2009.06.17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납입금액 1%	없음		0.650	0.800	0.030	0.015

B	2001.05.02	50억 이상 투자자	없음	없음	0.650	0.050	0.030	0.015
E	2009.06.17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없음	없음	0.650	0.980	0.030	0.015
C(W)	2006.01.13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보유한 자 나. 집합투자기구. 다.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없음	없음	0.650	0.000	0.030	0.015
C(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없음	없음	0.650	0.750	0.030	0.015
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후취판매수수료 부과)	없음	3년 이내 환매금액 의 0.15% 이내	0.650	0.350	0.030	0.015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2) 후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3) 보수는 순자산총액의 연간 %를 기준으로 하며, 매3개월마다 지급합니다.

주4) 보수 외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합투자기구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자집합투자기구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90% 이상

[이 투자신탁 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집합투자기구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	주요 투자대상	- 국내주식 60% 이상(단, 중소형 주식에 50%이상 투자) - 채권 40% 이하
	투자 목적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모투자신탁[주식]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
	주요 투자전략 및 투자 위험	철저한 “Bottom-up” 분석과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중소형 우량 주식에 투자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로 알리안츠 Best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90%이상을 투자하며, 모투자신탁인 알리안츠 Best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주로 저평가된 종목 및 높은 ROE를 가진 우량한 종목 위주로 투자됩니다. 특히, 중소형주[시가총액100위(매 분기 말 산정)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KOSPI 대형주 25%+ KOSPI 중형주 40%+ KOSPI 소형주 5%+ KOSDAQ 30% 입니다.

※ 설정일로부터 2005년 11월29일까지는 KOSDAQ 60% + KOSPI 200 40%로 산출, 2005년11월30일부터 2014년 3월 19일까지는 KOSPI 90%+ Call 10%로 산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20일부터는 운용 전략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비교지수를 KOSPI 대형주 25%+ KOSPI 중형주 40%+ KOSPI 소형주 5%+ KOSDAQ 30%으로 변경하여 산출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투자대상의 조건)

투자대상	투자 비율	주요 내용
①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이상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②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양도성 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매수	10% 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양도성 예금증서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③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를 둡니다.

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 ②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①	주식	60%이상 단, <u>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u> 에의 투자는 <u>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u>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u>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 9 조제 13 항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u> (이하 “주식”이라 한다)
		중소형주 50% 이상	<u>제1호에서 정의된 주식 중 시가총액100위(매분기말 산정)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u>
②	채권	40%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⑤장내 파생상품		증거금 15% 이하	법 제9조제14항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통화선물 및 통화선물옵션
⑥수익증권		5%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⑦투자증권 대여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양도성 예금 증서, 환매조 건부채권매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

다음의 경우에는 ① ~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대상 중 ①부터 ④까지의 투자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⑤부터 ⑧까지 및 아래의 투자제한 ②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아래의 투자제한 ⑦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함	

③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투자	④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에 따른 위험회피거래를 제외한 명목계약금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⑤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⑦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취득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⑧ 후순위채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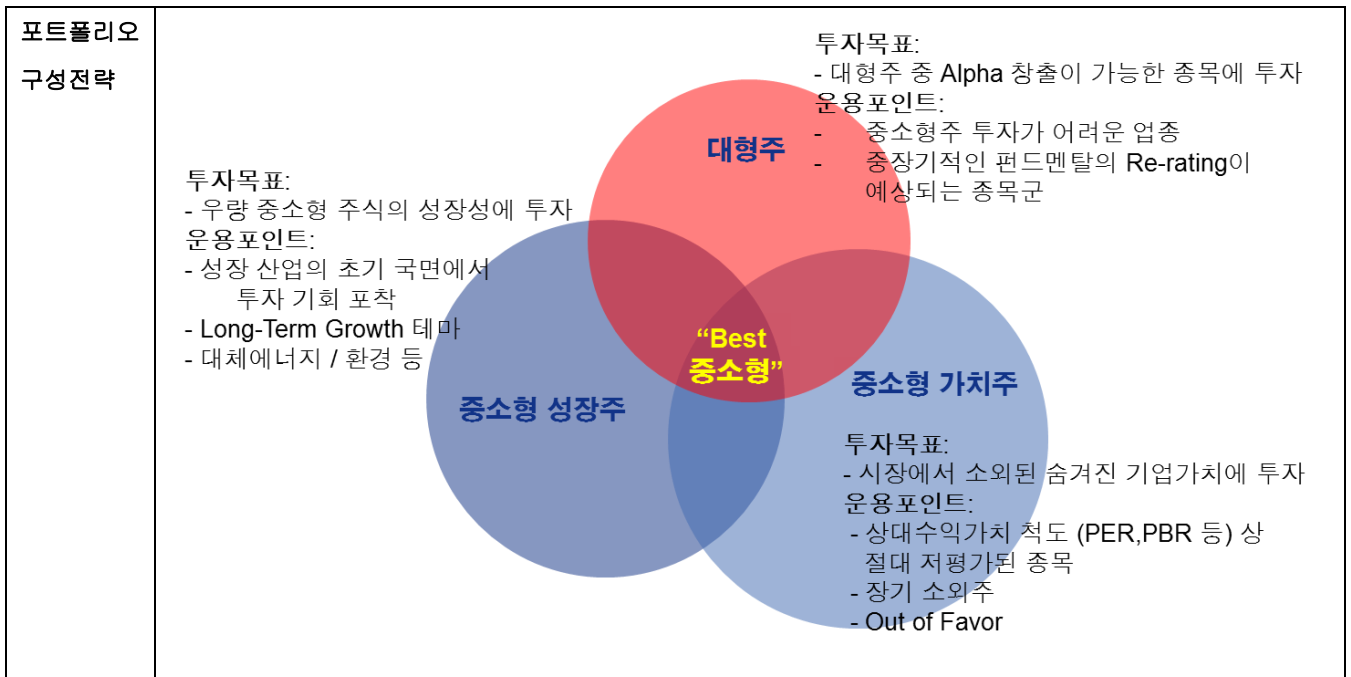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 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하는 자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KOSPI 대형주 25%+ KOSPI 중형주 40%+ KOSPI 소형주 5%+ KOSDAQ 30%** 입니다.

※ 설정일로부터 2005년 11월29일까지는 KOSDAQ 60% + KOSPI 200 40%로 산출, 2005년11월30일부터 2014년 3월 19일까지는 KOSPI 90%+ Call 10%로 산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20일부터는 운용 전략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비교지수를 KOSPI 대형주 25%+ KOSPI 중형주 40%+ KOSPI 소형주 5%+ KOSDAQ 30%으로 변경하여 산출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운용계획	이 투자신탁은 주로 저평가된 종목 및 높은 ROE를 가진 우량한 종목 위주로 투자됩니다. 특히, 중소형주(시가총액[매분기말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합하여 산정]100위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합니다. *참고: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모자형 구조로, 모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KOSPI 대형주 25%+ KOSPI 중형주 40%+ KOSPI 소형주 5%+ KOSDAQ 30%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와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 하였으나,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됩니다.
운용 전략	1 장기간에 걸친 우수한 투자 전략 - 국내 주식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소형주 투자는 대형주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 우량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 - 성장 단계의 초기 국면에 있는 중소형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3 시장에서 소외된 숨겨진 기업가치에 투자 - 대형주에 비해 리서치가 부족하고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 중소형주의 숨겨진 기업가치를 찾아냅니다. 4 적극적 운용을 통한 초과수익률 추구 - 철저한 개별종목 분석을 통한 운용인력의 종목선정 능력을 통해 초과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 상기의 전략은 시장 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 관리

(1) 리스크관리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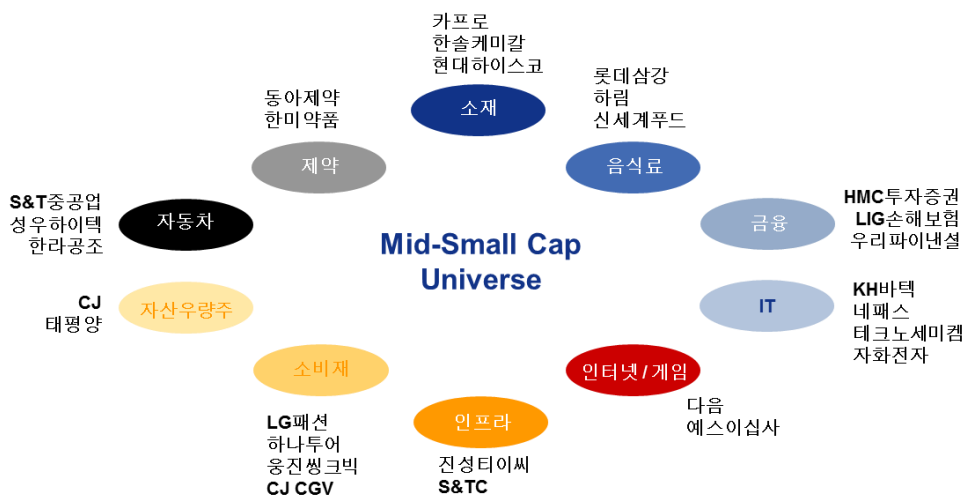
-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 리스크 요인별로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향을 설정
- 고객에 대한 선량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함

(2) 리스크관리 정책

- 운용자산관련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규정 제정 및 운영
- 투자의사결정과 병행하여 펀드의 시장 / 신용 /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
- 기 설정된 리스크 관리정책과 프로세스를 수정 및 보완
-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당사의 사무수탁회사인 외환펀드서비스 프로그램 내에 구축

분산투자를 통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관리

- 중소형주의 투자 리스크 : 개별 기업 리스크, 정보의 비대칭성, 유동성 등
-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 / 리턴 Profile 제고 (50개 이상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며, 특히 중소형주에 50% 이상을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편입된 주식 등의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은 미래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위험과 쿠폰의 재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은 단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에 비하여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가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 대부분이 상환되는 시기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자본손실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은 일정 매기마다 수령하는 이자액(Coupon)을 다시 재투자 했을 때의 수익률 변동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중간에 수령하는 이자액을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동일하게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권시장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므로, 만약 지금 받은 이자액을 재투자하는 시점에 시장 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 투자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투자신탁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장내파생상품 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은 특성상 기초자산의 시장가격 변동보다 더 큰 손익을 가져오는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크게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종류에 따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 움직임이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 대여 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단기대출 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단기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 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수익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변동 및 개별종목의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식가격은 일일 변동성이 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손실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성장성이 높은 우량 중소형 주식 종목을 대상으로 투자 Pool을 구성하여 그 중 저평가된 종목들에 투자합니다.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 및 가격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중소형주의 경우 회사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경제상황 변동의 악재 등에 더 민감하고 거래량도 급속히 감소할 수 있어, 가격하락폭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이 대형주 투자에 비해 더 크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해외계좌의무납 세법(FATCA) 및 미국 납세의 무자(US Taxpayers)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계자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이 처분을 통한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십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 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펀드의 지분은 어떠한 미국 납세의무자의 계좌에게도 청약이 권유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판매되어서도 안됩니다. 펀드가입 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그리고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납세의무자들에게 펀드의 지분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의무자의 펀드 지분을 강제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	--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2부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최저순자산액이 10억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 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 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 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수익자, 기존 수익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및 해외 관련 국가들의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투자대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

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하는 투자설명서상의 투자위험등급 분류와 판매회사에서 분류하여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지분증권(국내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므로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전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초과)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하)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운용전략 집합투자기구(파생상품형 포함)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

- 주 1) 투자위험등급분류는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의 자체기준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 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고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다만, 고위험자산을 기초로 하는 인덱스펀드(ETF 포함)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자체적인 기준 및 운용전략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주 3)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중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 주 4)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저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 주 5)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주 6)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 7) 위에 명시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 자체 내부 위험등급 심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에서 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위험분류 및 위험등급 범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대한 절대적인 분류기준은 아닙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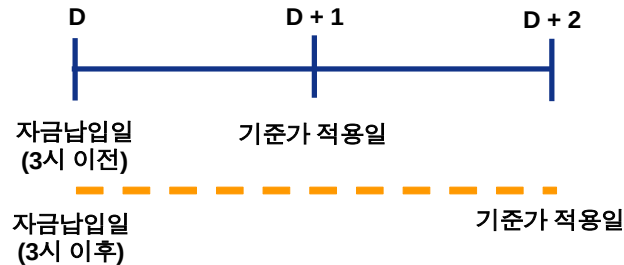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C1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C2	Class C1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Class C3	Class C2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Class C4	Class C3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Class C5	Class C4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Class A2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B	50억 이상 투자자
Class E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C(W)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보유한 자 나. 집합투자기구 다.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Class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



(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등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내에서 청약이 권유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개정된 1933년 미국증권거래법에 따른 규정 S의 규칙 902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의 계좌로 이전될 수도 없으며 또한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전될 수도 없습니다. 가입신청자들은 가입신청자들 본인이 미국인이 아님을 선언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신청자들은 미국인의 계좌를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인의 계좌를 대리하여 가입하는 것도 아니며, 미국인들에게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취득하는 것도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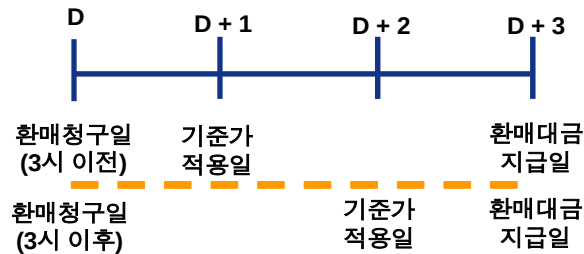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3)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또는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부분환매를 결정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이연판매보수 적용에 따른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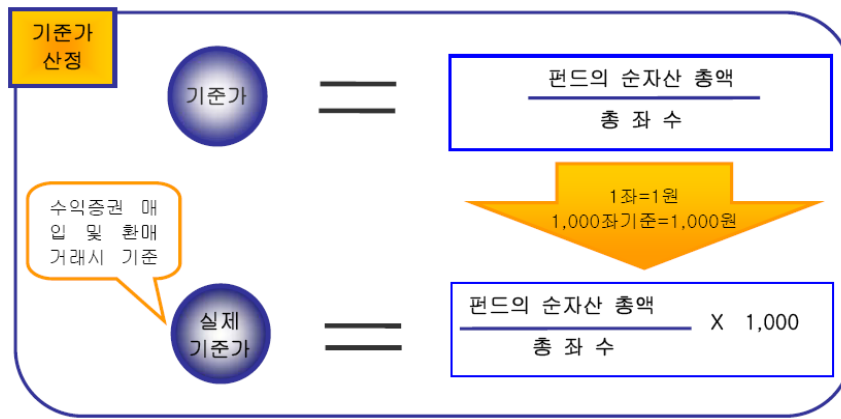
기존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2010년 10월 18일에 종류 C1의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부터 종류 C5까지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 규약 제3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C1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allianzgi.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평가방법(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
비상장채권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의 상장채권 가운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단,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 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주)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위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적용할 세부기준은 집합
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
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
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A2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Class C1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Class C2 수익증권			
Class C3 수익증권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Class C4 수익증권			
Class C5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	환매시
Class B 수익증권			
Class C(W) 수익증권			
Class E 수익증권			
Class C(P)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Class S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 시점에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 시 일회적 부과합니다. 다만, 후취판
매수수료는 이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Class)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 시기
	C1	C2	C3	C4	C5	A2	B	E	C(W)	C(P)	S	

집합투자업자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매3개월
판매회사	1.500	1.375	1.250	1.125	1.000	0.800	0.050	0.980	0.000	0.750	0.350	
신탁업자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보수합계	2.195	2.070	1.945	1.820	1.695	1.495	0.745	1.675	0.695	1.445	1.045	
기타비용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2	발생 시
총보수·비용	2.199	2.074	1.949	1.824	1.699	1.499	0.749	1.679	0.699	1.449	1.047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2.200	2.075	1.950	1.825	1.700	1.500	0.750	1.680	0.700	1.450	1.048	
증권거래비용	0.146	0.171	0.174	0.146	0.125	0.158	0.146	0.157	0.155	0.146	0.123	발생 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14.5.2~2015.5.1)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설정 펀드의 경우, Class C1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14.5.2~2015.5.1)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설정 펀드의 경우, Class C1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투자기간	가입시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1수익증권	-	231	671	1,079	2,180
A2 수익증권	99	256	584	935	1,923
B 수익증권	-	79	246	428	955
E 수익증권	-	176	547	941	2,044
C(W) 수익증권	-	74	230	400	893
C(P) 수익증권		152	473	816	1,784
S 수익증권		110	344	596	1,317

주 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lass C1, C2, C3, C4 수익증권 관련 총보수·비용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1년 단위로 Class C2, C3, C4, C5 수익증권으로 전환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Class S는 10년 이상 보유를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주 2)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주 3) 종류별(Class C1와 Class A2)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5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

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①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등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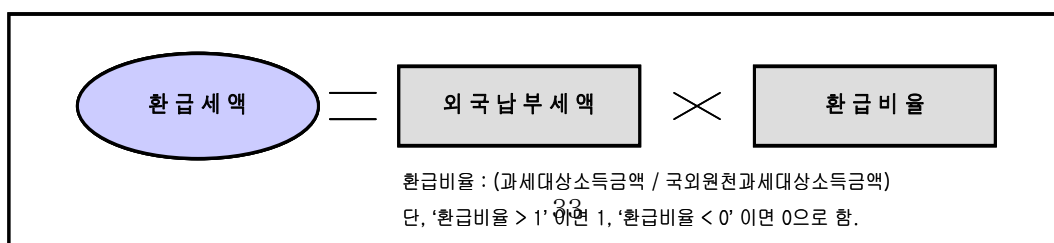
-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 하지만 투자신탁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 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적립식 가입의 경우 세제 혜택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도 소득 말정산 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세법의 변경 및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해당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은 동 투자신탁이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감사의견
제12기(2012.05.02 - 2013.05.01)	적정
제13기(2013.05.02 - 2014.05.01)	적정
제14기(2014.05.02 - 2015.05.01)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 14 기	제 13 기	제 12 기
	2015.05.01	2014.05.01	2013.05.01
운용자산	124,432,646,240	138,642,528,438	234,858,080,926
유가증권	123,592,442,271	137,841,385,873	234,023,020,570
현금 및 예치금	840,203,969	35,142,565	65,060,356
기타 운용자산	0	766,000,000	770,000,000
기타자산	1,248,367,193	280,778,422	1,548,383,234
자산총계	125,681,013,433	138,923,306,860	236,406,464,160
기타부채	24,376,116,060	8,284,468,668	2,990,329,292
부채총계	24,376,116,060	8,284,468,668	2,990,329,292
원본	101,304,897,373	130,638,838,192	233,416,134,868
자본총계	101,304,897,373	130,638,838,192	233,416,134,868
운용수익	27,410,487,086	6,178,076,651	34,062,784,839
이자수익	16,586,966	19,118,778	16,843,645
매매/평가차익(손)	27,359,656,872	6,135,624,133	34,015,097,301
기타수익	34,243,248	23,333,740	30,843,893
운용비용	2,904,044	2,961,932	3,462,748
매매수수료	154,044	211,932	162,748
기타비용	2,750,000	2,750,000	3,300,000

당기순이익	27,407,583,042	6,175,114,719	34,059,322,091
매매회전율		-	144.54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단, 매매회전율은 모두자산탁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3 기	제 13 기	제 12 기
		2015.05.01	2014.05.01	2013.05.01
운용자산		124,432,646,240	138,642,528,438	234,858,080,926
현금및예치금		840,203,969	35,142,565	65,060,356
현금및현금성자산		840,203,969	35,142,565	65,060,356
대출채권		0	766,000,000	770,000,000
콜론		0	766,000,000	770,000,000
유가증권		123,592,442,271	137,841,385,873	234,023,020,570
수익증권		123,592,442,271	137,841,385,873	234,023,020,570
기타자산		1,248,367,193	280,778,422	1,548,383,234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247,386,019	280,609,535	1,548,093,460
미수이자		981,174	168,887	289,774
자 산 총 계		125,681,013,433	138,923,306,860	236,406,464,160
기타부채		24,376,116,060	8,284,468,668	2,990,329,292
해지미지급금		1,247,386,021	280,609,538	1,548,093,464
수수료미지급금		2,750,000	2,768,947	3,318,296
기타미지급금		23,125,980,039	8,001,090,183	1,438,917,532
부 채 총 계		24,376,116,060	8,284,468,668	2,990,329,292
원 본		101,304,897,373	130,638,838,192	233,416,134,868
이익잉여금		0	0	0
자 본 총 계		101,304,897,373	130,638,838,192	233,416,134,868
부채 및 자본 총계		125,681,013,433	138,923,306,860	236,406,464,160
총좌수	[운용]	101,304,897,373	130,638,838,192	233,416,134,868
	B	10,000,000,000	0	7,946,665,358
	C(W)	5,925,733,932	3,591,369,102	3,940,749,062
	A2	41,838,230,412	62,282,439,324	103,126,893,042
	E	7,302,547,818	9,219,305,224	13,679,296,242

	S	108,948,009	10,000	0
	C1	3,228,059,677	3,744,441,407	3,041,548,724
	C2	2,669,491,336	1,937,369,047	8,548,835,189
	C3	679,624,844	5,517,165,129	87,796,086,196
	C4	3,267,310,108	42,170,280,035	11,619,528,410
	C5	27,684,800,077	7,325,154,486	431,054,349
기준가격	[운용]	1,000.0	1,000.0	1,000.00
	B	1,000.0	-	1,000.00
	C(W)	1,000.0	1,000.0	992.43
	A2	1,000.0	1,000.0	976.90
	E	1,000.0	1,000.0	973.22
	S	1,000.0	993.8	-
	C1	1,000.0	1,000.0	963.47
	C2	1,000.0	1,000.0	965.81
	C3	1,000.0	1,000.0	968.16
	C4	1,000.0	1,000.0	970.69
	C5	1,000.0	1,000.0	973.01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4 기	제 13 기	제 12 기
	2014.05.02 – 2015.05.01	2013.05.02 – 2014.05.01	2012.05.02 – 2013.05.01
운용수익(또는 운용손실)	27,410,487,086	6,178,076,651	34,062,784,839
투자수익	50,830,214	42,421,683	45,012,216
이자수익	16,586,966	19,118,778	16,843,645
수수료수익	34,243,248	23,302,905	28,168,571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7,377,677,281	9,595,482,942	36,265,339,082
지분증권매매차익	7,905,883,944	2,042,576,224	7,308,015,779
지분증권평가차익	19,471,793,337	7,552,906,718	28,957,323,30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8,020,409	3,459,858,809	2,250,241,781
지분증권매매차손	18,020,409	3,459,858,809	2,250,241,781
기타운용수익	0	30,835	2,675,322
운용비용	2,904,044	2,961,932	3,462,748

매매수수료		154,044	211,932	162,748
기타운용비용		2,750,000	2,750,000	3,300,00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운용]	27,407,583,042	6,175,114,719	34,059,322,091
	Class B	1,880,880,054	0	152,964,797
	Class C(W)	1,124,084,552	186,188,504	265,890,637
	Class A2	11,034,162,562	1,408,962,765	12,584,089,407
	Class E	1,708,608,220	296,300,935	1,697,242,778
	Class S	14,322,885	-62	0
	Class C1	608,889,351	171,832,472	215,864,897
	Class C2	476,576,922	-121,314,642	136,761,351
	Class C3	422,012,221	-2,994,419,175	11,426,023,222
	Class C4	3,649,997,210	4,505,567,112	968,924,824
	Class C5	4,402,654,051	129,299,554	46,459,932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운용]	223.14	34.88	103.33
	Class B	219.34	-	4.97
	Class C(W)	265.95	49.54	45.64
	Class A2	204.86	17.96	97.66
	Class E	199.01	26.47	93.81
	Class S	106.53	-226.30	-
	Class C1	131.19	49.74	30.98
	Class C2	308.39	-26.05	2.07
	Class C3	149.93	-87.05	147.89
	Class C4	219.04	113.07	355.70
	Class C5	194.24	70.70	102.8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억원, 억좌)

종류	기간	기간초잔고		재투자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설정좌수	설정금액	환매좌수	환매금액	좌수	금액
Class A2	2012/05/02~2013/05/01	1,433	1,237	0	0	283	244	684	599	1,031	1,007
	2013/05/02~2014/05/01	1,031	1,007	0	0	255	250	663	635	623	636
	2014/05/02~2015/05/01	623	636	13	13	269	295	487	535	418	506
Class C1	2012/05/02~2013/05/01	111	95	0	0	69	60	150	128	30	29
	2013/05/02~2014/05/01	30	29	0	0	59	57	52	50	37	37
	2014/05/02~2015/05/01	37	37	0	0	65	72	70	77	32	39

Class C2	2012/05/02~2013/05/01	1,533	1,316	0	0	214	180	1,662	1,415	85	83
	2013/05/02~2014/05/01	85	83	0	0	38	36	104	98	19	19
	2014/05/02~2015/05/01	19	19	0	0	37	40	29	32	27	32
Class C3	2012/05/02~2013/05/01	170	146	0	0	1,434	1,227	726	638	878	850
	2013/05/02~2014/05/01	878	850	0	0	104	98	926	862	55	56
	2014/05/02~2015/05/01	55	56	0	0	15	17	64	68	7	8
Class C4	2012/05/02~2013/05/01	1	1	0	0	134	119	19	17	116	113
	2013/05/02~2014/05/01	116	113	0	0	718	670	412	402	422	427
	2014/05/02~2015/05/01	422	427	5	5	53	57	447	481	33	39
Class C5	2012/05/02~2013/05/01	5	4	0	0	1	1	1	1	4	4
	2013/05/02~2014/05/01	4	4	0	0	77	76	8	8	73	74
	2014/05/02~2015/05/01	73	74	1	1	342	370	139	154	277	334
Class E	2012/05/02~2013/05/01	212	183	0	0	35	30	111	97	137	133
	2013/05/02~2014/05/01	137	133	0	0	38	36	82	79	92	94
	2014/05/02~2015/05/01	92	94	1	1	39	43	60	66	73	88
Class C(W)	2012/05/02~2013/05/01	98	85	0	0	1	0	59	49	39	39
	2013/05/02~2014/05/01	39	39	0	0	0	0	3	3	36	38
	2014/05/02~2015/05/01	36	38	2	2	25	28	3	4	59	72
Class S	2014/04/22~2014/05/01	0	0	0	0	0	0	0	0	0	0
	2014/05/02~2015/05/01	0	0	0	0	3	4	2	2	1	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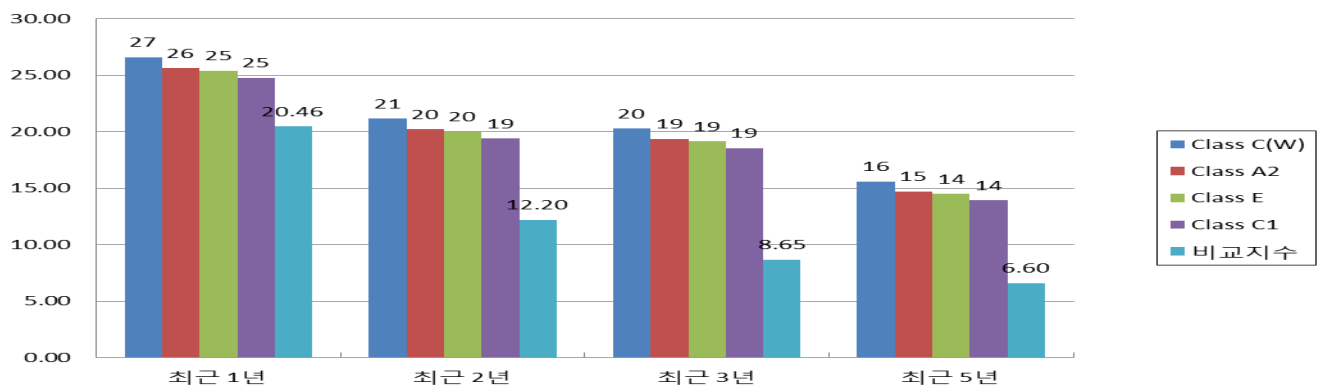
(2015년 7월 31일 기준 /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4/08/01~ 2015/07/31	2013/08/01~ 2015/07/31	2012/08/01~ 2015/07/31	2010/08/01~ 2015/07/31	(%)
Class C(W)	2006-01-13	26.59	21.14	20.28	15.60	14.15
비교지수	2006-01-13	20.46	12.20	8.65	6.60	5.98

Class A2	2009-06-17	25.61	20.19	19.34	14.70	18.28
비교지수	2009-06-17	20.46	12.20	8.65	6.60	9.03
Class E	2009-06-17	25.39	19.98	19.13	14.48	18.03
비교지수	2009-06-17	20.46	12.20	8.65	6.60	9.03
Class S	2014-04-22	26.16				23.74
비교지수	2014-04-22	20.46				16.33
Class C1	2006-01-13	24.76	19.37	18.53	13.92	12.46
비교지수	2006-01-13	20.46	12.20	8.65	6.60	5.98

주1) 비교지수는 11월29일까지는 KOSDAQ 60% + KOSPI 200 40%로 산출, 2005년11월30일부터 2014년 3월 19일까지는 KOSPI 90%+ Call 10%로 산출, 2014년 3월 20일 이후부터 KOSPI 대형주 25%+ KOSPI 중형주 40%+ KOSPI 소형주 5%+ KOSDAQ 30%로 산출합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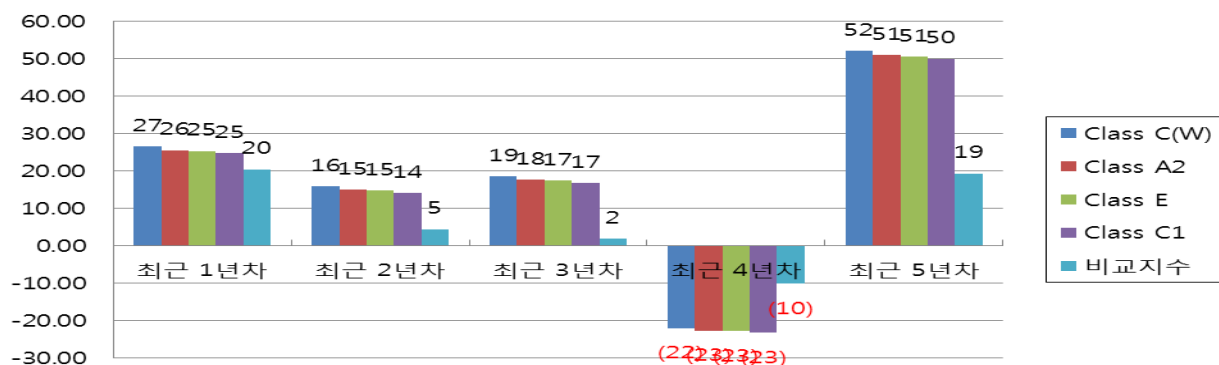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2015년 7월 31일 기준 /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4/08/01~ 2015/07/31	2013/08/01~ 2014/07/31	2012/08/01~ 2013/07/31	2011/08/01~ 2012/07/31	2010/08/01~ 2011/07/31
Class C(W)	2006-01-13	26.59	15.91	18.58	-22.00	52.13
비교지수	2006-01-13	20.46	4.51	1.89	-10.10	19.38
Class A2	2009-06-17	25.61	15.01	17.66	-22.62	50.98
비교지수	2009-06-17	20.46	4.51	1.89	-10.10	19.38
Class E	2009-06-17	25.39	14.81	17.46	-22.77	50.64
비교지수	2009-06-17	20.46	4.51	1.89	-10.10	19.38
Class S	2014-04-22	26.16				
비교지수	2014-04-22	20.46				
Class C1	2006-01-13	24.76	14.22	16.85	-23.16	50.02
비교지수	2006-01-13	20.46	4.51	1.89	-10.10	19.38

주1) 비교지수는 11월29일까지는 KOSDAQ 60% + KOSPI 200 40%로 산출, 2005년11월30일부터 2014년 3월 19일까지는 KOSPI 90%+ Call 10%로 산출, 2014년 3월 20일 이후부터 KOSPI 대형주 25%+ KOSPI 중형주 40%+ KOSPI 소형주 5%+ KOSDAQ 30%로 산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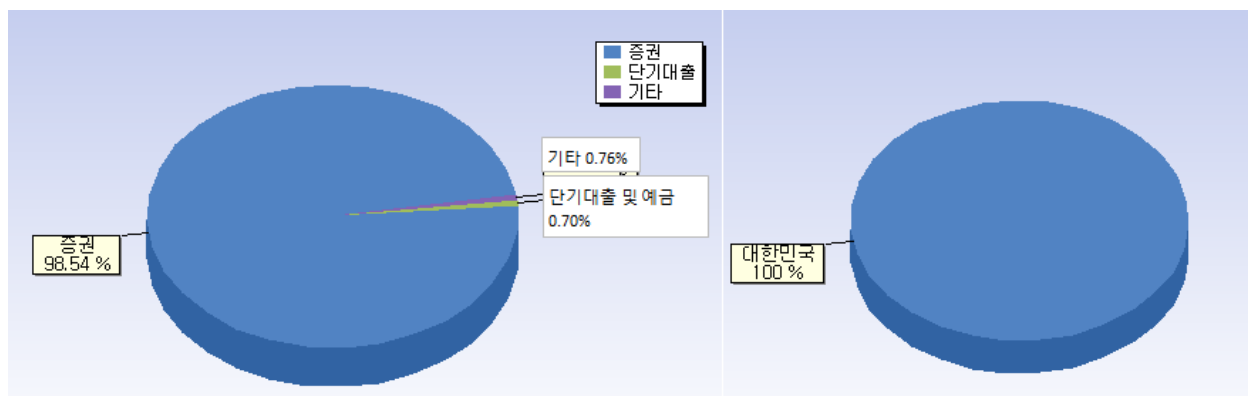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5.07.31 기준/운용펀드 기준/단위: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 자산	기타			
대한민국	0	0	0	1,189	0	0	0	0	0	8	9	1,206
	0.00	0.00	0.00	98.54	0.00	0.00	0.00	0.00	0.00	0.70	0.76	100.00
자산합계	0	0	0	1,189	0	0	0	0	0	8	9	1,206
	0.00	0.00	0.00	98.54	0.00	0.00	0.00	0.00	0.00	0.70	0.76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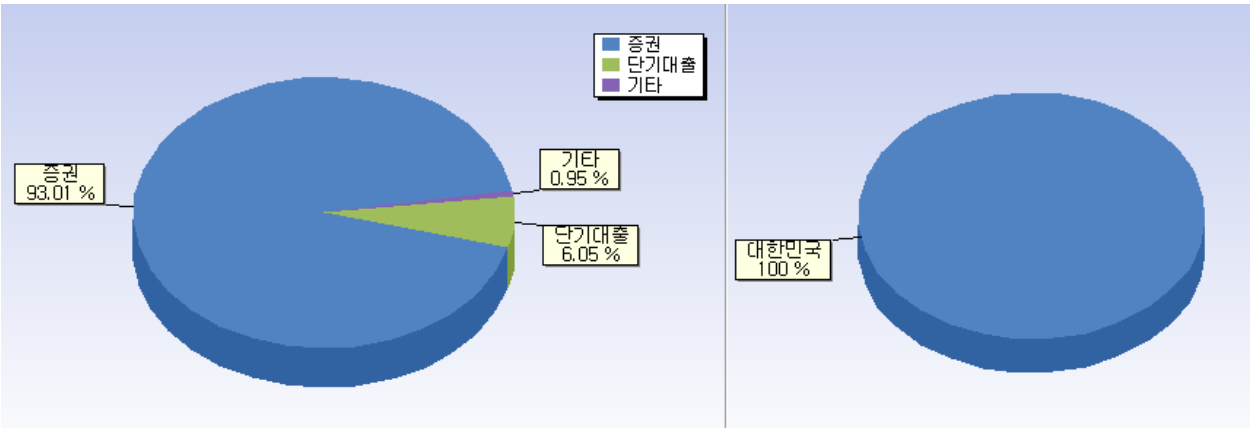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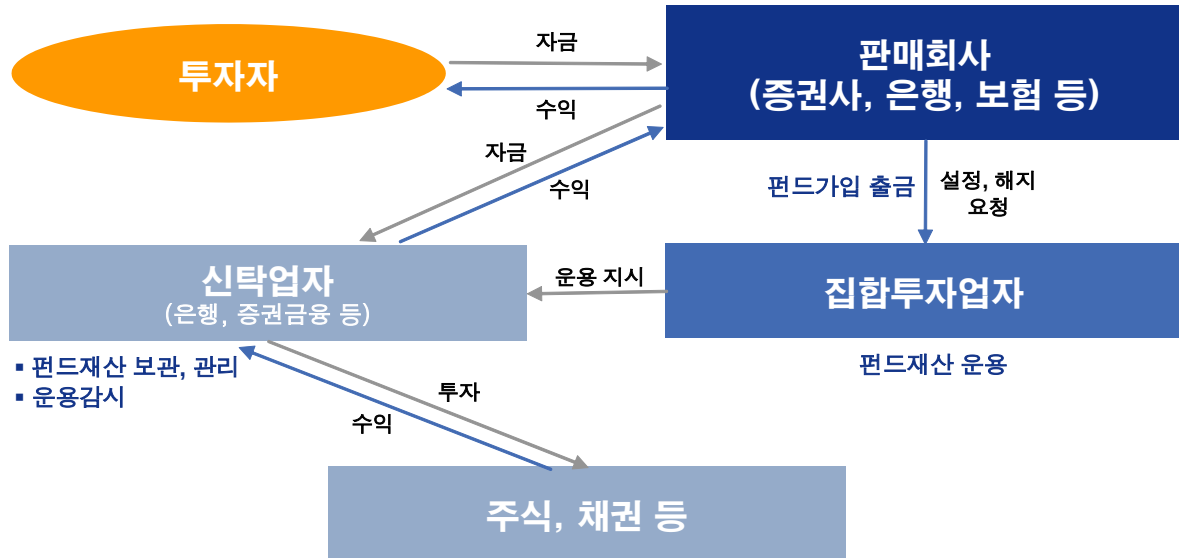
(2015.07.31 기준/ 단위: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 자산	기타			
대한민국	1,116	0	0	0	0	0	0	0	0	73	11	1,200

	93.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05	0.95	100.00
자산합계	1,116	0	0	0	0	0	0	0	0	73	11	1,200
	93.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05	0.95	100.00



펀드의 운용 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알리안츠타워 02-2071-9900
회사연혁	2000.12 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1. 1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 2001. 3 영업 개시 2005. 8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사명변경
자본금	200억
주요주주현황	Allianz SE:50%, Allianz Global Investors GmbH:5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선관의무 등

-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집합투자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업무의 위탁(기준가격계산 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쎄하나펀드서비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억원)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4.12.31	2013.12.31	계정과목	2014.12.31	2013.12.31
현금 및 예치금	360	383	영업수익	264	219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0	6	영업비용	181	138
매도가능금융자산	7	7	영업이익	83	81
대여금 및 수취채권	67	68	영업외수익	0	0
유형자산	2	3	영업외비용	0	2
무형자산	8	8			
기타자산	10	15			
자산총계	455	491			
기타부채	62	113			
부채총계	62	113	법인세차감전이익	83	79
자본금	200	200	법인세비용	18	17
이익잉여금	193	178	당기순이익	65	62
자본총계	393	378			

라. 운용자산 규모

(2015.10.31 현재 / 단위: 억원)

구분	증권				MMF	재간접	투자일임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수탁고	5,179	513	5,104	382	9	3,258	129,088	143,53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KEB 하나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 가 101-1 TEL) 02-2002-1111 www.hanabank.com
회 사 연 혁 등	1991.07 은행업무개시 1999.01 보람은행과 합병 2002.02 서울은행과 통합 2015.09 외환은행과 합병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수익금, 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 증권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1)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 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하나펀드서비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TEL) 02-6714-4613
회사연혁등	2003년 4월 1일 설립 2015년 9월 1일 사명 변경(舊 외환펀드서비스)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②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③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④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2) 의무 및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 채권평가	NICE 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 층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28 한국화재보험협회 4 층 ☎ 02-3215-14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대하빌딩 4 층 ☎ 02-398-39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4 층 ☎ 02-721-53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설립일 : 2000. 5. 29 -등록일 : 2000. 7. 1 -자본금 : 50 억원 (www.koreaap.com)	-설립일 : 2000. 6. 20 -등록일 : 2000. 6. 30 -자본금 : 30 억원 (www.bond.co.kr)	-설립일 : 2000. 6. 15 -등록일 : 2000. 6. 15 -자본금 : 47.5 억원 (www.npricing.co.kr)	-설립일 : 2011. 6. 9 -등록일 : 2011. 9. 23 -자본금 : 50 억원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③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 제 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5) 투자신탁의 합병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③ 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시행령 제223조 제3항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집합투자계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④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집합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이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이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그 증권이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이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하여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1)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 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 230 조제 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 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등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④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가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⑨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allianzgi.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법 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 일 이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거래	1) 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①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마케팅비용 ④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⑤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용어의 정리

용어 (가나다순)	내 용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은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펀드순자산총액을 그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수익증권 총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펀드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펀드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이나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예상이 빗나갈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환율가격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하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성과보수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전에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계약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말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법령 및 신탁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 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신탁계약

	에 따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즉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통상 연 %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펀드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신탁업자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주식형투자신탁	펀드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라 하며,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통상 펀드라고 말하며, 대표적으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중도환매를 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코드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해지	펀드의 신탁계약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투자대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펀드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펀드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펀드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됩니다.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는 대부분 달러 등 외국 통화로 주식 등을 사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는 선물환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